

#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1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(제4조)에 의거,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추진경과

- 2024. 5. 31 ~ 6. 28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(총 27명)
- 2024. 7. 19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  
(추천자 27명 중 16명 선정)

### 나. 선정결과 : 총 16명(남 8명, 여 8명) ※ 세부명단 별첨

- 국가 및 지역 : 14개국(※ 국명 가나다순)

|         |   |     |   |     |   |       |   |
|---------|---|-----|---|-----|---|-------|---|
| 네덜란드    | 1 | 대만  | 2 | 독일  | 1 | 미국    | 1 |
| 볼리비아    | 1 | 베트남 | 1 | 스위스 | 1 | 아르헨티나 | 1 |
| 오스트리아   | 1 | 일본  | 2 | 중국  | 1 | 카자흐스탄 | 1 |
| 콩고민주공화국 | 1 | 프랑스 | 1 |     |   |       |   |

### 다. 향후일정(안)

- 2024.11월 말~12월 「2024 명예시민증 수여식」 개최

## 라. 관련근거

### 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### 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### 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이병진 (☎ 2133-5288)